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변경시행일 : 2020년 9월 30일

3. 변경사유

- ① 컷-오프제도(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편) 시행
 - 판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일부개정
- ② 집합투자규약 변경(2020-10-05 시행)

4. 변경사항

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5조 (판매가격)	<p>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__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p>	<p>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__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p>
부칙	<신 설>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 가>	2020-09-30 · 컷-오프제도(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편) 시행 - 판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일부개정 · 집합투자규약 변경(2020-10-05 시행)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이하 생략)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이하 현행과 같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대상자산</th> <th style="width: 40%;">변경 전</th> <th style="width: 45%;">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상장주식</td> <td>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 <td>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 </tr> <tr> <td>비상장주식</td> <td>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 <td>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td> </tr> <tr> <td>집합투자증권</td> <td>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 <td>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 </tr> <tr> <td>외국집합투자</td> <td>평가기준일에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td> <td>평가기준일 전날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td> </tr> </tbody> </table>	대상자산	변경 전	변경 후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	평가기준일에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대상자산	변경 전	변경 후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	평가기준일에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	평가기준일에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증권	격에 의함.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상장주식 및 채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 전날에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계산할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하는 가격) 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한 이와 같음

끝.